

해외기업 M&A 성공하려면

글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지난 2년 동안 두산인프라코어의 Bobcat 인수, STX의 아카야즈 인수,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BCC은행 인수 등 국내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은 확장 국면이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해외 M&A는 그 규모나 건수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상반기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52% 정도 감소했는데, 중국이나 일본기업이 축적된 자본을 기반으로 자원개발·금융업 등에 대한 해외투자를 급격히 늘리는 것과 대비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해외투자 대상국도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편중돼 미래 성장동력 및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 해외 공장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대세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M&A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시장의 인력·원자재·시설·기술 등 경영자원을 활용해 단기간에 시너지를 발휘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M&A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규모 기업은 부채비율이 낮고 재무상태가 건전하므로 환율이 안정되면 면밀한 시장분석과 리스크 관리 하에 해외 M&A를 전략적으로 추진해볼 만하다.

해외 M&A도 국내 M&A와 유사하게 사전준비-압찰-실사-협상-인수 완결-인수 후 통합 등의 순서를 거쳐 진행된다. 인수자로서는 우선 경영목적에 맞고 통합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피인수 회사를 발굴해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M&A 준비단계부터 인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피인수 회사의 가치평가, 인수구조, 인수자금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두어야 M&A의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국가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산업별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조사도 필수다.

인수자는 증권회사·법률회사·회계법인 등을 자문가로 고용해 법률·회계·세무 등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거래구조를 고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투자대상국의 외환규제,

금융시장 발전도, 사법제도의 신뢰성, 정치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투자회수가 안전하게 보장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또한 피인수 회사의 재무·자산·부채·영업·계약·환경·기술 등에 대한 정밀실사를 해 회사 가치를 산정하고, 실사 결과를 감안해 해당 M&A 거래를 할 것인지, 인수대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파악된 위험요소를 협상 과정과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인수자는 인수협상이 원만히 진행된 경우 M&A 계약에 전후해 국내 법령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 공시, 금융당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절차를 이행하고, 해외투자대상국의 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거래를 완결할 수 있다.

해외 M&A의 경우 법률·제도·언어·문화·시장조건의 차이로 인해 피인수 회사의 통합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수 이후 경영진의 구성 및 영업의 통합에서 현지 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고용·임금·해고 등의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현지 노동 법령과 관행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거래 시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국내기업이 해외 단독 진출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 공동 투자하거나, 현지 파트너를 구해 합작회사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진출하는 것이 시행착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해외투자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통해 해외 M&A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제2회 사법시험,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석사, 버클리대 법학박사(US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문분야: M&A·사모투자·증권·금융·도산 등, KAIST 경영대학원 M&A 및 금융법 강사